

군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일

군산시 훈령 제 397 호

군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에 적정한 수행 도모와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관리되는 기기에 한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②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 ⑥ “군산시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⑦ “통합관제센터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산시가 구축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정보수집,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통합관제센터”는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군산시 교통정보센터”(군산시 진포로 134)에 통합 구축한다.

제9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생활안전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통합·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12조(총괄·관리책임자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통합관제센터장”이라 칭하며,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무책임자는 “지능형교통계장”으로 한다.

제13조(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생활안전위험 등 긴급상황을 발견한 경우, 상주 경찰 공무원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무책임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기관과 연계 운영)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안대책이 강구된 “군산시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19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제공·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중인 경우
2.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계기관은 시가 제공한 영상정보를 목적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영상정보 보호원칙)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요원(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을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23조(교육의무)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영상정보처리운영협의회

제25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 2.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등 중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사항
- 3. 영상정보의 수집·열람·제공·삭제 등에 관한 사항 중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제12조에 의한 CCTV통합관제센터 “총괄책임자” 를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 안전이 속한 “관리책임자”, 군산경찰서 담당과장, 군산시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담당자, 기타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안전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협의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운영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의 해설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군산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군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1-2335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예우 및 보훈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1]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 보훈수당 지급액 인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21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youn0806@korea.kr
 - 팩스 : 063-454-305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전화 063-454-3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보훈수당 지급기준은 2022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별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지급액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9만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8만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4만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대상자	지급액
1. 「참전유공자-----	<u>8만원</u>	1. 「참전유공자-----	<u>9만원</u>
2. 「국가유공자-----	<u>7만원</u>	2. 「국가유공자-----	<u>8만원</u>
3. 「참전유공자-----		3. 「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u>3만원</u>	4. 「국가유공자-----	<u>4만원</u>
5. 「고엽제후유-----		5. 「고엽제후유-----	
6. 「국가유공자-----		6. 「국가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		7. 「특수임무유공-----	
8. 「국가유공자-----		8. 「국가유공자-----	
9. 「5·18민주유공-----		9. 「5·18민주유공-----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 지원대상 지급액 인상하여 보훈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보훈수당 지급액 인상으로 보훈수당 지급액 증가 예상
 - 참전수당, 보훈수당, 확대 보훈수당 1만원 인상

나. 비용추계 결과 : 388,920,000원

- 참전수당 : 930명 × 12개월 × 10,000원 = 111,600,000원
- 보훈수당 : 825명 × 12개월 × 10,000원 = 99,000,000원
- 확대 보훈수당 : 1,486명 × 12개월 × 10,000원 = 178,32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지원(도비 지원금 정액 1인 1만원→2만원 증액)

3.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연락처	(063) 454-305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388,920	388,920	388,920	388,920	388,920	1,944,600
세 출		388,920	388,920	388,920	388,920	388,920	1,944,600
보훈수당		388,920	388,920	388,920	388,920	388,920	1,944,600
재원 조달		388,920	388,920	388,920	388,920	388,920	1,944,6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388,920	388,920	388,920	388,920	388,920	1,944,600
	도비 보조금	388,920	388,920	388,920	388,920	388,920	1,944,6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자부담)							

군산시 공고 제2021-2350호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우리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신청 시 관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로 하는 지역 제한을 완화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춰 조문의 구성, 용어 정비 등

2.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원을 제한하는 조문 일부 삭제(붉은글씨)

-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관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조문의 항,호,목의 표기방식을 규정에 맞게 변경(4~8,10,12,14,18조)

↳ 항(①, ②, ③), 호(1, 2, 3), 목(가, 나, 다)

다.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오탈자 수정

3. 의견제출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수도과

(전화 : 063)454-5402, FAX : 063)452-8177 전자우편 : crossover7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과 급수계(전화 454-54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 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기능사2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전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행업소라 함은 전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4.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수도설비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영업용자본명세표
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6. 공사용장비기구소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7. 영업소 건축물이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8.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제4조(지정기준 및 제한) ①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산시 관내 급수전 매 4,000전마다 1개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써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2,000전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시한 지정요건을 갖춘 신청업체수가 모집업체수를 초과 지정신청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대행업자로서 년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삭제 <2016.08.10>

제6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에 따른 대행업체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금 예치)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 1. 은행의 지급보증서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 3.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한다.
-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흠이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케하고 전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 ③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 ④ 보증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1.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 2. 공사기간은 공사의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2호 서식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 ①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같은 조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시공기술자의 배치)

- 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군산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5조제1호에서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③ 급수공사 현장에는 수도사업소장이 발행한 시공승인한 사항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 라.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 마.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별지제7호서식)
- ②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
- ③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 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회 1개월, 2회 2개월, 3회6개월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2. 이 규칙에 정한 제신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제1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8조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대행업자 지정후 주된 영업사무소를 군산시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7. 지정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제17조(인가 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있다.

제18조(보수책임)

-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같은 조 제1항의 보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자격취소) 시장은 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을 때

제20조(청문) 제16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한다.

부 칙 <2012.08.16 규칙 제5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1.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이규칙에 의한 시공기술자로 본다.
- 2.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영업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의 유효 지정기간은 만료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 대행업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1-2355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품목을 세분화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단계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제5항 후단 삭제
 - 배출요령에 적합하지 않게 배출되어도 전량 수거한다는 단서 삭제
-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상세화 [별표2]
 - 비닐류, 종이팩, 스티로폼류 분리배출 품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TEL. 063-454-3464, FAX. 063-452-8166, E-mail. soyeun27@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계(☎063-454-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7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 후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분류하여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신 문 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포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3.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걸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농 약 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고 철 류	-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PET병 (생수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플라스틱류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8.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흔들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비닐류는 중량제봉투로 배출
9.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운송장, 테이프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중량제 봉투로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0. 의류	- 일반의류	- 물이나 기름, 흙 등 이물질이 묻지 않는 의류 -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 이불, 솜, 커튼 등은 재활용이 안 됨
11.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구매처에 반환방식으로 배출 - 읍면동 사무소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 동지역 의류수거함에 부착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12.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읍면동 사무소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에 배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추가로 비용 발생 사항 없음

4. 작 성 자

작성자	군산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연락처	063-454-3440

군산시 고시 제2021-17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군산시 나운동 1234-4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1234-4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나. 명 칭 : 은파유원지 더테라스 관광호텔 신축공사(2단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부지면적(변경)
 - 1) 당초 : 전체) 35,161㎡ / 2단계) 17,940㎡
 - 2) 변경 : 전체) 38,361㎡ / 2단계) 21,140㎡
 - 나. 건축규모(변경)
 - 1) 당초
 - 전 체 : 건축 5,692.86㎡, 연면적 58,844.59㎡
 - 2단계 : 건축 1,894.92㎡, 연면적 43,492.59㎡
 - 2) 변경
 - 전 체 : 건축 9,297.90㎡, 연면적 58,843.64㎡
 - 2단계 : 건축 5,499.96㎡, 연면적 43,491.94㎡

4. 사업시행자(주소변경)

가. 성 명 : 시엘티개발(주) 대표 정호경

나. 주 소

- 당초 :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55, 3층(효자동3가)

- 변경 : 군산시 은파순환길 20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2단계

1) 당초 : 인가고시일 ~ 2022. 12. 31.

2) 변경 : 인가고시일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게재 실음생략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171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26.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30건, 변경 6건, 폐지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1. 11.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역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변경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 2길 5-14(송풍동)	전라북도 군산시 청소년 화관로 16-6(송풍동)	20211125	건물번호 변경 요청	20100125	주변에 청소년회관이 있음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538-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라로 614	20211125	가설건축물 건물번호 부여	20100125	서수, 나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라선이라함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698-5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80	20211125		20090710	항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반영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동 891-4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2길 21 (신평동)	2021112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82-17		20211124	건물번호 폐지 후에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56-9, 1294-1, 1656-1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82-13	20211125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옥구농협 RPC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33-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남로 79 (미장동)	20211124		20150127	미장동의 남쪽도로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55-9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43 (조촌동)	20211124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합병	전라북도 군산시 한밭1길 35 (나운동)	전라북도 군산시 한밭1길 39(나운동, 진해어샵)	20211123	건물번호 합병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진해어샵
건물번호 합병	전라북도 군산시 한밭1길 39(나운동, 진해어샵)	전라북도 군산시 한밭1길 39(나운동, 진해어샵)	20211123	건물번호 합병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진해어샵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6-23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331 (비응도동)	20211124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12-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상작2길 46-11	20211123		20070528	창오리 상작 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7-1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3길 8-5 (미장동)	20211123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1137-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뜰아름길 24-5	20211123		20111209	뜰아름 마을 명칭 인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228-4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314 (구암동)	20211118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815-7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회미로 74-30	20211118		20100125	신란 경덕완 8년(서기 749년)때 현 회현면 이 회미현 인용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원당길 5 (미룡동)		20211118	건물번호 폐지 후에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577-39	전라북도 군산시 원당길 5 (미룡동)	20211118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합병	전라북도 군산시 공포 1로 81 (조촌동)	전라북도 군산시 공 포1로 79 (조촌동, 더 샵 디오션시티)	20211117	도로명주소 합 병	20180109	활처럼 휘어져 흐르 는 나루터가 있던 옛 지명	더샵 디 오션시티
건물 번호 합병	전라북도 군산시 공포 2로 80 (조촌동)	전라북도 군산시 공 포1로 79 (조촌동, 더 샵 디오션시티)	20211117	도로명주소 합 병	20180109	활처럼 휘어져 흐르 는 나루터가 있던 옛 지명	더샵 디 오션시티
건물 번호 합병	전라북도 군산시 공포 1로 79 (조촌동, 더샵 디오션시티)	전라북도 군산시 공 포1로 79 (조촌동, 더 샵 디오션시티)	20211117	도로명주소 합 병	20180109	활처럼 휘어져 흐르 는 나루터가 있던 옛 지명	더샵 디 오션시티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 동 53-15	전라북도 군산시 은 파순환길 79 (미룡동)	20211116	가설건축물 번 호부여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 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 동 547-8	전라북도 군산시 미 장3길 12-14 (미장 동)	20211119	건물신축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 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 면 대정리 855-1	전라북도 군산시 회 현면 회미로 146	20211115		20100125	신란 경덕완 8년(서기 749년)때 현 회현면 이 회미현 인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 면 여방리 120-2	전라북도 군산시 성 산면 여방1길 107	20211115		2007052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 호사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 면 장자도리 7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장자도1길 91	20211112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 동 528-20	전라북도 군산시 미 장11길 14-3 (미장 동)	20211112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 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 동 540-4	전라북도 군산시 미 장5길 4-8 (미장동)	20211111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 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 면 관월리 605-3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서라로 376	20211110		20100125	서수, 나포를 연결하 는 도로로 서라선이 라함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 동 492-24, 492-22, 492-27, 492-31	전라북도 군산시 구 암3.1로 91-77 (경암 동)	20211110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 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 동 204-2	전라북도 군산시 새 만금북로 679 (내초 동)	20211111		20090710	새만금을 연결하는 도로명칭 반영(방조제 의 북쪽위치)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 면 읍내리 389	전라북도 군산시 임 피면 임피성안길 33	20211109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 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 면 화등리 552-1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친구1길 50	20211109		20100125	신촌과 구산마을의 합하여 친구 마을로 명칭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 동 493-1	전라북도 군산시 미 장안5길 15 (미장동)	20211109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 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 면 죽산리 1385-1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변영로 1225	20211109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 존도로명 활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 면 죽산리 1385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변영로 1223	20211109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 존도로명 활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 면 어청도리 196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어청도1길 7-6	20211109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이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 동 872-5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안10길 21 (수송동)	20211109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군산시 고시 제2021-17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1. 16.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1. 시 행 자 : 전라북도지사(수산정책과)
2.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수산정책과)
3. 공사내용 : 인공어초 제작 및 해상설치
4. 공사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42-1(횡경도) 인근
공유수면(35°52.742 ' (N), 126°25.862 ' (E))
5. 공사면적 : 2,800m²
6. 공사기간 : ~ 2022. 03. 31

군산시 고시 제2021-17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1. 16.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1. 시 행 자 : 전라북도지사(수산정책과)
2.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수산정책과)
3. 공사내용 : 인공어초 제작 및 해상설치
4. 공사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 66인근 공유수면(36°03.796 ' (N), 126°02.744 ' (E))
5. 공사면적 : 1,146.8m²
6. 공사기간 : ~ 2022. 4. 1.

군산시 고시 제2021-17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25.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21-00008호 (2021. 11. 24.)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빛가람동) 31층
 - 성명 :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 ③ 허가목적 : 부유식 해상기상관측기 설치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43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6503.9m²
- ⑥ 허가기간 : 2021. 11. 24. ~ 2023. 10.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1-17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1. 29.

군 산 시 장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96번길 7-8		
성명(법인명)	주식회사 한일		
하천명칭	경포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점용목적	○ 군산시 경암동 616		
점용면적	영구점용 54.0m ²		
최초허가일	2021년 11월 23일		
점용기간	일시점용 : 2021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0일(30일간)		

군산시 고시 제2021-178호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시 중동 237-6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산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도서는 군산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일

I.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변경) 내용

- 1. 정비사업의 명칭 :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50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군산시 중동 237-6번지 일원	80,698	-	80,698	

나. 정비사업 시행방식 및 시행자

-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2) 사업의 시행자

- 기반시설 : 전라북도 군산시장, - 주택개량 : 토지등소유자

3) 정비사업기간 : 정비구역 지정 시 ~ 2022년(변경)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2개소	1,976	감) 10	1,966		
기 정	91	주차장	중동 262번지 일원	430	감) 10	420	전북 고 2515	-
변 경	92	주차장	중동 270-82번지 일원	1,546	-	1,546	('16.1.15)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92	주차장	□ 군산시 중동 262번지 일원 □ 변경(면적 : 420m ²)	□ 주차장 조성부지 내 1필지(10m ²) 제척

나. 소공원

- 소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2개소	2,389	-	2,389		
기 정	18	서래공원	소공원	중동 266-2번지 일원	637	-	637	전북 고 2515	-
기 정	19	강변공원	소공원	중동 274-9번지 일원	1,752	-	1,752	('16.1.15)	-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1개소	1,172	-	1,172		
기 정	34	공공공지	금암동 274-236번지 일원	1,172	-	1,172	전북 고 2515 ('16.1.15)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2개소	3,312	-	3,312	
기 정	복합커뮤니티센터	중동 272-13번지 일원	1,732	-	1,732	
기 정	노인복지시설	중동 274-352번지 일원	1,580	-	1,580	
	경로당 부지		1,308	-	1,308	
	부설주차장		272	-	272	

5. 기존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은 존치하고,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된 건축물은 철거이주로 계획하며, 기타 사업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자력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구분	적용기준	동 수(동)	구성비(%)	비고
계	-	486	100.0	-
존치대상	□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22	4.5	-
개량대상	□ 기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397	81.7	-
철거대상	□ 시설용지 편입 건축물	67	13.8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환경 보전	□ 인위적인 절·성토 지양으로 지형변화의 최소화 □ 정비사업 시행 시 인구 및 생활수준에 맞는 용수 공급 □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자재 및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를 확립 □ 정비구역 내 공공공지, 주차장 등 공공용지 비율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재난 방지	□ 건축물 개량과 홍수 시를 대비한 우·오수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요소 제거 □ 기존의 구역 내 지반상태를 유지하고 도로계획고를 인접대지 지반고에 맞춰서 배수가 원활 하도록 조성 □ 구역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교육환경 현황	□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경계로 500m 인근에 초등학교 1개소(구암초교)가 위치하고 있음		
교육환경 보호계획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이하	50이하
	진동[dB(V)]	70이하	65이하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8.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0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중동 237-6번지 일원	80,698	-	80,698	

- 결정 사유서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지역
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0,698	-	80,698	100.00	-
일반상업지역	60,238	-	60,238	74.65	-
준공업지역	20,460	-	20,460	25.35	-

2)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 내용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방화지구	중동 273-48번지 일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	2,360,000 (60,319)	전북고 136호 (87.10.31)	()중동지구 편입면적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계	67,796			67,796	67,796	
-	1	10,552	1-1	중동 258번지 일원	9,599	9,609	현지개량용지
			1-2	중동 262번지 일원	430	420	교통시설(주차장)
			1-3	중동 266-2번지 일원	523	523	공간시설(서래공원)
	2	13,257	2-1	중동 270-84번지 일원	11,711	11,711	현지개량용지
			2-2	중동 270-82번지 일원	1,546	1,546	교통시설(주차장)
	3	9,377	3-1	중동 270-6번지 일원	7,645	7,645	현지개량용지
			3-2	중동 272-13번지 일원	1,732	1,732	공동이용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4	8,661	4-1	중동 274-395번지 일원	7,353	7,353	현지개량용지
			4-2	중동 274-352번지 일원	1,308	1,308	공동이용시설(노인복지시설)
	5	10,199	5-1	중동 273-133번지 일원	9,927	9,927	현지개량용지
			5-2	중동 273-17번지 일원	272	272	공동이용시설(노인복지시설 부설주차장)
	6	14,578	6-1	중동 274-375번지 일원	13,195	13,195	현지개량용지
			6-2	중동 274-9번지 일원	1,383	1,383	공간시설(강변공원)
	7	1,172	7-1	금암동 274-236번지 일원	1,172	1,172	공공공지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각 해당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준공업지역 : 60%이하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 1,000% 이하 - 준공업지역 : 300% 이하	
높 이 (층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5)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내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현지개량 시 개인주차공간을 가급적 확보하여 노상주차 저감
- 가로환경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별도 지정사항 없음(건축법에 따름)

10.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구 분	계 획 내 용
수 재 해	- 본 정비구역의 입지특성상 표고차 및 경사가 거의 없는 매우 완만한 지형이나 해수면과 표고차가 크지 않아 우천시 상습침수구역임
화 재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 준수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 계획 없음

12.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별도 계획 없음

II.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도 : 게재생략

1. 정비구역 결정도(S=1/1,000)
2. 정비계획 결정도(S=1/1,000)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1,000)
4.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1,000)
5. 지형도면 고시도(S=1/1,00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고시 제2021-6호

개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개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목적

농촌의 읍면을 중심으로 과소화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정주여건 개선 및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명 : 개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 사업위치 :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일원

4. 사업비 : 4,000백만원(군특 2,800, 도비 360, 시비 840)

5.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개년)

6. 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어울림문화센터

나. 지역경관개선 : 보행환경정비, 가로환경정비

다.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경영지원

7. 사업효과 : 개정면 거점지역 기반정비 및 기능강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8.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9. 위탁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10. 기타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063-454-589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1-2272호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군 산 시 장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 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해역 일원
- 다. 사업규모 : 외곽시설(신규호안 357m, 석축보강 1식), 매립(1,038㎡), 기타 항만시설(내항침수방지시설 : 1,581m, 해양경관시설 4,300㎡, 친수공간 조성 14,000㎡)
- 라. 사업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약 24개월
- 마. 사업시행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1년 11월 22일~12월 17일(20일간, 공휴일, 토요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군산시(환경정책과), 옥도면사무소, 서천군(환경보호과)

※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년 12월 01일(수) 14:00

나. 장 소 : 군산중동복합커뮤니티센터 회의실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안2길 22)

4. 주민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공람기관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환경정책과(☎ 063-454-3382) 및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3-441-227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2021. 1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근대문화유산과 항만이 공존하는 군산내항은 해안선의 호안 구조물이 1930년대 축조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폭풍 시 침수발생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재해안전항만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군산내항은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구역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수립용역(2011, 국토해양부)」 및 「도서지역 해안침수예상도(2014,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른 침수예상 구역으로 침수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노후항만시설 보강 및 지역과 연계한 침수방지시설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음.

사업의 추진경위

- 1899. 05. : 국제무역항으로 개항
- 1995. 04. : 제1차(1992~2001) 항만기본계획 고시
- 2001. 12. : 제2차(2002~2011)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고시
- 2004. 10. : 제2차(2006~2011)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2010. 06. : 군산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20. 12. :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 고시
- 2021. 05. :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21. 06. : 환경영향평가협의의 위인 위촉 및 심의요청
- 2021. 07.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2021. 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주인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 사업시행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의 "4. 항만의 건설"중 외곽시설 300m 이상에 해당되므로 금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3】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4. 항만의 건설사업	나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u>300미터 이상</u>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곽시설 : 신규호안(357m), 호안보강(1식) ○ 매립 : 부지조성(1,038㎡) ○ 기타 항만시설 : 내항침수방지시설(1,581m), 해양경관시설 및 친수공원조성 1식 	

1. 사업의 내용

- 가. 사 업 명 :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해역 일원
- 다.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마. 협의기관 : 전북지방환경청
- 바.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24개월
- 사. 사 업 비 : 약 41,189백만원
- 아.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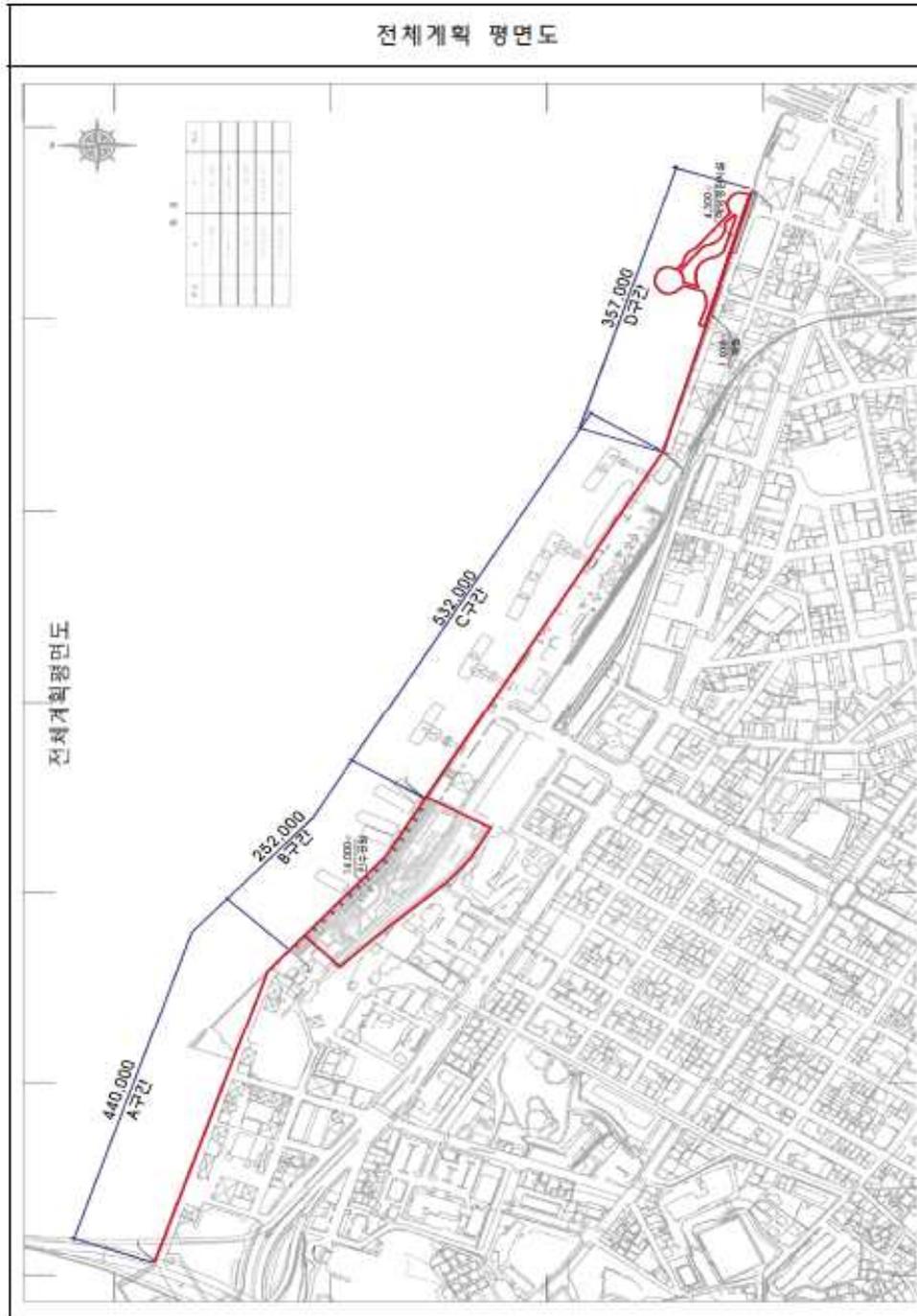
구 분		사업규모	비고
외곽시설	신규호안	357m	매립에 따른 신규 호안
	석축보강	1식	B, C구간 일부 석축보강
매립	부지조성	1,038㎡	
기타 항만시설	내항침수방지시설	1,581m	
	해양경관시설	4,300㎡	
	친수공원조성	14,000㎡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조안) 요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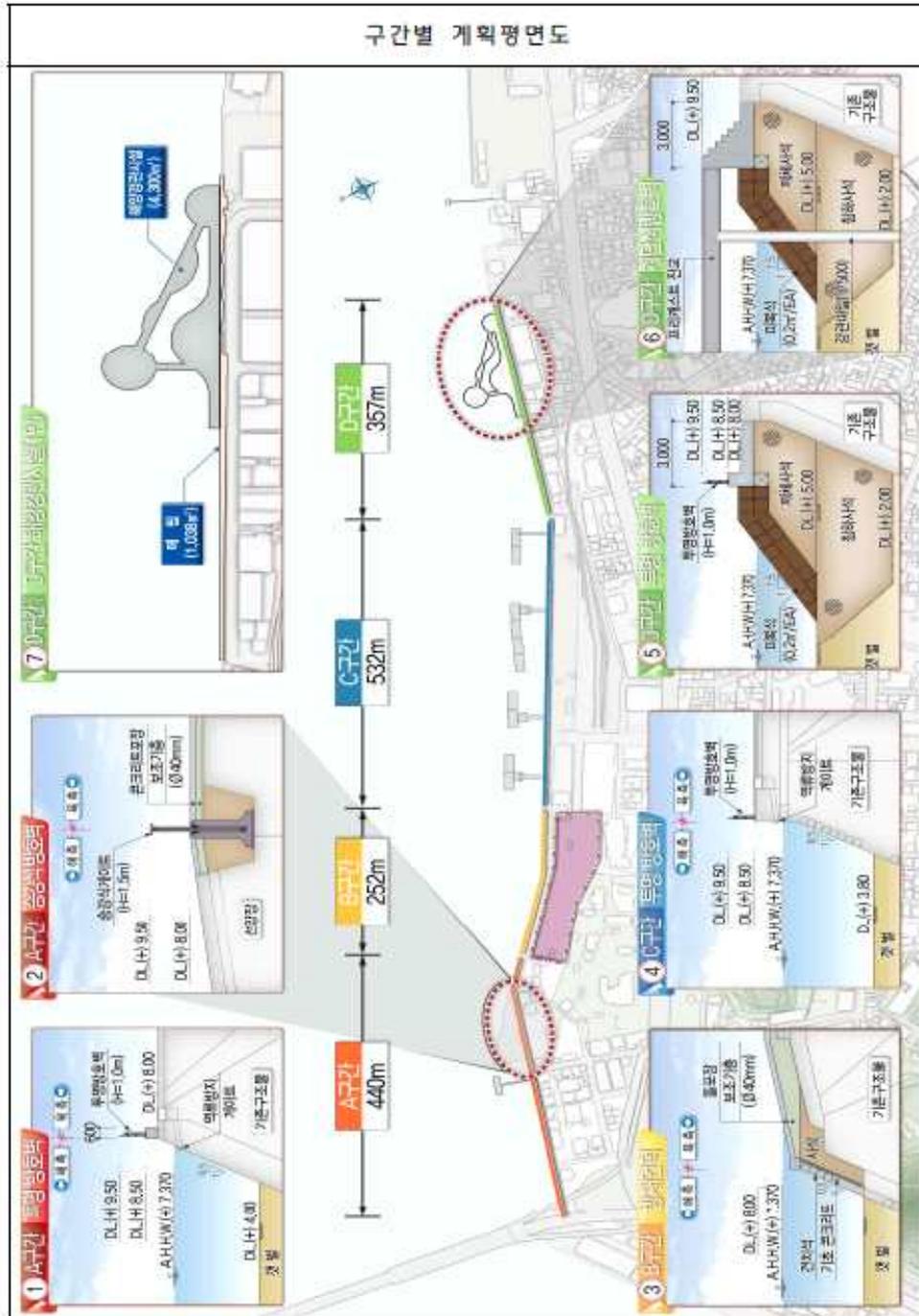
사업지구 위치도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군산내항 북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2. 환경관련지구·지역 지정 현황

- 사업지구 주변 환경관련지구·지역 지정현황 조사결과 사업지구 내에 국가등록문화재인 군산내항 역사문학공간과 군산내항 호안시설, 군산내항 뜰다리 부두(부잔교)가 위치함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3.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가. 해양동·식물상

- 공사시 발생되는 부유사 등으로 인해 해양생물 군집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오탁방지막 설치 및 부유사 모니터링, 공사시기 조절 등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상공사로 인해 해저지형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면 이동성이 작은 저서동물의 서식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립되는 지역의 서식지 감소 및 공사시 단기적으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 및 서식밀도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시 및 운영시 선박을 비롯한 각종 해상장비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유류가 해상에 유출될 경우, 물리화학적 영향, 부착, 독성,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육상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식물상의 훼손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생의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지구 일대의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주변 지역 식물의 일시적인 생육 저해 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나대지에 주변 지역으로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사업지구 일대 기존 선박 및 항만 시설 등의 운영으로 사업시행시 육상동물상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육상동물상은 소음 및 진동 등의 서식지 방해요인의 증가에 따라 일시적인 교란은 예상됨.
- 사업시행에 따른 투명방호벽설치로 인한 조류충돌이 예상됨.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다. 자연환경자산

■ 공사시

-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변화 관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강하구'에 연접하여 위치하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산내항 역사문화공간, '군산내항 호안시설, '군산내항 뜰다리부두(부잔교), '군산내항 철도'내에 위치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유사 및 소음·진동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붉은발말뚝게가 사업지구로부터 약 2.7km 이격되어 있으나 조건대 상부에 분포하는 생육특성 및 부유사확산 수치실험 결과, 부유사가 붉은발말뚝게가 서식하는 지역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지구 인근 법정보호종의 경우, 조사지역 일대의 인간 활동 및 서식여건(항만시설 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동성 및 행동반경이 넓고, 해양 내 교란 방지를 위한 저감시설 등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라. 기상

- 사업시행에 따른 기상변화의 정량적인 분석은 어려운 실정이며, 매립 등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므로 미세한 기상변화가 예상됨. 하지만, 변화정도가 극저적이면서도 경미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대기질

- PM-10 : 예측지점 전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 만족
- 24시간 : 가중농도 0.0776~21.0051 $\mu\text{g}/\text{m}^3$, 예측농도 32.0776~53.0051 $\mu\text{g}/\text{m}^3$
- 연간 : 가중농도 0.0055~3.6913 $\mu\text{g}/\text{m}^3$, 예측농도 26.0055~29.6913 $\mu\text{g}/\text{m}^3$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NO₂ : 예측지점 전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 만족
 - 24시간 : 가중농도 0.0312~8.4423ppm, 예측농도 10.0312~18.4423ppb
 - 연간 : 가중농도 0.0022~1.4836ppm, 예측농도 8.0022~9.4836ppb

바. 온실가스

- 공사시
 - 건설장비 가동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 0.74tCO₂eq

사. 해양환경

1) 해양물리

- 해수유동 실험 및 퇴적물이동 실험 결과, 본 사업의 특성상 소규모로 매립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전·후의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2) 해양수질 및 저질

- 공사시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량 산정결과 : 14.39m³/일
- 부유사확산 실험
 - 저감 전
 - 0.1ppm 기준 : 확산거리 1.100km, 확산면적 0.715km²
 - 0.2ppm 기준 : 확산거리 0.425km, 확산면적 0.108km²
 - 0.5ppm 기준 : 확산거리 0.143km, 확산면적 0.020km²
 - 저감 후
 - 0.1ppm 기준 : 확산거리 0.710km(35.45% 감소), 확산면적 0.310km²(56.64% 감소)
 - 0.2ppm 기준 : 확산거리 0.300km(29.41% 감소), 확산면적 0.060km²(44.44% 감소)
 - 0.5ppm 기준 : 확산거리 0.100km(30.07% 감소), 확산면적 0.013km²(35.00% 감소)
- 공사시 부유사 발생으로 인한 어업권 영향 검토결과,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운영시 강우로 인한 해역으로 비점오염물질 유입이 예상됨.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아. 토지이용

- 공회 사업계획에 대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계성 부합
- 사업지구 내 상가, 찻집 등이 다수 위치하며, 호안, 선양장, 공원 등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됨. 사업시행으로 신규호안 357m, 석축보강 1식, 내항 침수방지시설 1,581m, 매립 1,038㎡, 해양경관시설 4,300㎡, 친수공간 14,000㎡ 설치할 계획이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면배치계획을 검토

자. 지형·지질

- 사업지구 전면해상 수심분포는 DL(-)2.5~(+)5.3m 의 분포를 보임.
- 수심 및 해안선의 변화가 예상되나, 자연해안선의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공사 소요물량(사석)
 - 석축호안복원 : 1,041.16㎡
 - 매립호안 : 28,054.11㎡
- 사업지구 내 국가등록문화재 위치하여 현상변경이 필요함.

차.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단계에서의 생활폐기물 84.24kg/일, 분뇨 84.76L/일로 예측됨.
- 공사단계에서의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량은 8.2L/일의 폐유가 발생할 것으로 산정됨.
- 공사단계에서의 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며, 주요 공사로 인하여 페콘크리트 4,386.903ton, 폐합성수지 오탁방지막 24span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카. 소음·진동

- 공사시 예측소음도는 45.8~78.2dB(A)로 1개 지점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
- 장비의 합성진동도는 35.5dB(V)로 산출되었고, 사업지구 경계에서 10m 이격시 33.4dB(V)로 생활진동규제기준 65dB(V)를 만족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타. 경관

- 주변 군산내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근대화거리 등 주변 지역경관과 유사하면서 연속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수평구조물로 계획되어 있어 기존 시계 차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원경의 조망지점에서의 경관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파. 인구·주거

- 공사시
 - 투입인부에 의한 일시적인 인구증가 현상이 예상되나, 전문 기술직을 제외한 단순인부 등은 현지인을 주로 고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건설인력에 의한 인구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운영시
 - 호안 보강 및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인구의 증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친수공간 및 해양경관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과 편의를 도모하나, 인구 수 증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하. 산 업

- 공사시
 - 사업지구 인근에는 동측으로 약 2km 이격하여 1건의 어업권이 위치하고 있으나, 부유사 최대 확산 범위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운영시
 - 본 사업은 호안 보강 및 침수피해 방지시설, 친수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운영시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 및 재산의 피해 규모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한 해양경관시설 조성 등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4. 환경피해 저감방안

가. 해양동·식물상

- 오락방지막 설치
-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시기 조절
- 해양 장비 및 선박 사고에 대한 대비

나. 육상동·식물상

-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단계별, 공정별 공사공정을 실시하여 주변 식물상과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살수를 시행할 계획임.
-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방안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거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사업시행시 단계별 공사를 통한 야생동물의 주변 서식지로의 시간적 여유 제공함
- 공사시 효율적인 공사장비의 선택 및 운용 등으로 소음 최소화를 하며, 공사인부에 의한 야생동물의 포획 및 살생 금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함.
- 조류들이 방호벽을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방호벽 내·외부에 무늬나 문양을 새겨 조류충돌을 방지할 계획임.

다.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유사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오락방지막 및 공사용등부표 설치 및 부유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효율적인 장비투입 계획 수립, 공사강도 조절, 작업시간 조정 등을 실시할 계획임.
- 사업시행으로 인한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토사유입 저감시설(오탁방지막,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 단계적인 공사 시행 및 무분별한 포획금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임.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라. 대기질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토사운반차량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 효율적인 장비투입 계획 수립

마. 온실가스

- 노후건설장비 사용자제 및 투입 장비 공회전 금지
- 저탄소자재 및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에너지사용량 저감공사
- 폐기물 적정 처리

바. 해양환경

- 공사시
 - 현장사무소는 우선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현장사무소 개설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간이화장실 설치할 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방류수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제시된 용량별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 후,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
 - 공사시 오탁방지막 설치(24Span)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사용 등부표 설치(2기)
 - 공사시 모니터링 계획 및 공사시기 조정
 - 우발적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방제장비 비치 및 방제체계 구축
- 운영시
 - 사업지구에는 스크린형 비점저감시설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In-line 방식보다는 우수관로 또는 합류식 관로 유수 흐름의 영향이 적은 Side-stream 방식으로 계획하였음.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사. 토지이용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호안, 침수방지시설, 친수공간, 해양경관시설 등의 조성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평면배치계획을 수립함.

야. 지형·지질

- 재료원은 재료(사석) 수급 여부, 운반거리, 단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공사용 작업장(적치장)은 친수공원을 임시 활용할 계획임.
- 사업지구 내 위치한 국가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을 실시할 계획임.

자.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는 군산시 처리체계에 의거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각 폐기물별 수거 및 보관을 위하여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현장사무소는 기존 건물을 임대할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며, 현장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별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임. 또한, 필요시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임.
- 공사장비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경우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적법 처리할 계획임.
- 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금회 사업의 경우 건설폐기물량이 100톤 이상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여 처리할 계획임.

차. 소음·진동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주간에 실시(작업시간 준수)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km/hr)
- 장비의 정비불량에 따른 소음억제를 위하여 충분한 정비 및 점검 실시
- 저소음 공사장비 사용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카. 경관

- 관련 계획 등을 준수하여 인공시설물의 시각적 위압감과 단절감을 최소화하고 기존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함.

타. 산업

- 필요시 오탉방지막 설치, 해양환경(부유물질) 모니터링 실시, 유류오염 방제대책 수립 등 저감방안을 수립·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5. 결 론

-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현상들의 상호관계는 환경현황을 기초로 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 평가항목별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되었고, 이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 본 사업계획에 의한 환경적인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투입되는 장비로 인한 대기질 오염물질 및 소음·진동 발생, 사석투하에 따른 부유사 발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영향예측 정도에 따라 수립한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수행된다면 본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군산시 공고 제2021-229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서군산)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3-154(2013.12.27.)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시행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서군산)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11월 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산북동 335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나. 명칭 : 서군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 1단계 축구장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부지면적 : 19,918m²(1단계 축구장)
 -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529.84m², 연면적 528.91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성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5. 사업기간

- 1단계 : 축구장 (인가고시일 ~ 2021. 12. 31.)
- 2단계 : 복합체육센터 (인가고시일 ~ 2023. 12. 31.)

6. 준공검사일 : 2021. 10. 18.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게재 실음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21-230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신흥동 26-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11월 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신흥동 26-2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
 - 2) 명 칭 : 월명산 전망대 신축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전망대 : 3,212m²
 - 진입도로 : 9,013m² (연장 221m, 폭 6m)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 2)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사. 관계도서 : 실음생략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서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21필지		48,062	12,225						
1	군산시 해망동	995-6	임	24,989	128	기획재정부					전망대
2	군산시 신흥동	26-2	임	3,306	2,088	군산시					전망대
3	군산시 신흥동	26-6	전	433	433	군산시					전망대
4	군산시 신흥동	26-24	임	1,028	563	군산시					전망대
5	군산시 신흥동	26-5	전	6,828	3,457	군산시					잔입도로
6	군산시 신흥동	26-11	임	1,038	425	군산시					잔입도로
7	군산시 신흥동	26-14	전	1,676	186	군산시					잔입도로
8	군산시 신흥동	26-20	전	992	410	군산시					잔입도로
9	군산시 신흥동	26-21	전	889	889	군산시					잔입도로
10	군산시 신흥동	26-27	대	266	60	군산시					잔입도로
11	군산시 신흥동	26-28	전	829	829	기획재정부					잔입도로
12	군산시 신흥동	26-30	임	1,213	820	기획재정부					잔입도로
13	군산시 신흥동	26-31	전	179	103	기획재정부					잔입도로
14	군산시 신흥동	26-34	대	1,185	579	기획재정부 군산시					잔입도로
15	군산시 신흥동	26-35	대	116	116	기획재정부					잔입도로
16	군산시 신흥동	26-36	대	169	169	기획재정부					잔입도로
17	군산시 신흥동	26-38	전	410	410	기획재정부					잔입도로
18	군산시 신흥동	26-40	대	50	50	기획재정부					잔입도로
19	군산시 신흥동	39	대	575	222	기획재정부					잔입도로
20	군산시 신흥동	39-5	전	1,739	237	군산시					잔입도로
21	군산시 신흥동	39-8	전	152	51	군산시					잔입도로

군산시 공고 제2021-2311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정정)합니다.

2021. 12. 1.

군 산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정정내용)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대야면	농도	접산선	대야 314호	대야면 접산리 1110	대야면 접산리 1009-15	678	접산리	8.0	8.0	농어촌도로 확·포장 (종점 지변정정)

2. 사업명 : 대야면 삼라교 재가설공사

3. 사업기간 : 2019. 12. 01. ~ 2022. 12. 31.

4. 사업시행 : 군산시청 건설과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지형도면고시도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대야면 삼라교 재가설공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명칭	주소	관리 내용	
1	군산	대야	접산	970		도	64.0	64.0	국(건설교통부)					
2				964		구	106.0	106.0	국(농수산부)					
3				1111		구	36.0	36.0	국(농림부)					
4				1012-1		답	549.4	549.4	군산시					
5				508-27		답	88.0	88.0	군산시					
6				508-33		답	238.0	238.0	군산시					
7				803-6		전	224.0	224.0	군산시					
8				803-5		도	89.0	89.0	군산시					
9				802-1		전	83.0	83.0	군산시					
10				508-28		답	752.0	752.0	군산시					
11				508-29		답	114.0	114.0	군산시					
12				508-34		답	224.0	224.0	군산시					
13				508-24		답	186.0	186.0	군산시					
14				988		도	30.0	30.0	국(농수산부)					
15				508-30		답	857.0	857.0	군산시					
16				518-27		도	10.0	10.0	군산시					
17				989		도	13.0	13.0	국(농수산부)					
18				508-32		답	500.0	500.0	군산시					
19				508-35		답	548.0	548.0	군산시					
20				1134		도	885.0	885.0	국(농림부)					
21				511-27		답	48.0	48.0	군산시					
22				1021-7		답	545.0	545.0	군산시					
23				1135		구	18.0	18.0	국(농림부)					
24				1136		도	34.0	34.0	국(농림부)					
25				1023-10		답	62.0	62.0	군산시					
26				1109		구	204.0	204.0	국(농림부)					
27				1011-5		답	1,479.6	1,479.6	조*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서군산 농업협 동조합	군산시 공항로 422 (산복지점)	근저 당권	
28				1107		구	43.0	43.0	국(농림부)					
29				1132		도	319.0	319.0	국(농림부)					
30				1009-15		답	1,777.8	1,777.8	조*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서군산 농업협 동조합	군산시 공항로 422 (산복지점)	근저 당권	
31				1009-14		답	1,471.5	1,471.5	조*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서군산 농업협 동조합	군산시 공항로 422 산복지점	근저 당권	
32				1106		도	106.0	106.0	국(농림부)					
33				1011-4		답	636.0	636.0	군산시					
34				803-2		전	188.0	188.0	군산시					
35				803-3		도	136.0	136.0	군산시					
36				1110		도	457.0	457.0	국(농림부)					

군산시 공고 제2021-2312호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25.

군 산 시 장



- 1. 공고기간: 2021. 11. 25.~12. 09.(14일간)
- 2. 대 상: 도로명 부여 31개(로급 1개, 길급 30개)
- 3. 도로구간의 기점과 종점: 붙임 참조
- 4. 도로의 길이: 붙임 참조
- 5. 도로명 및 부여사유: 붙임 참조
- 6.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 가. 기 간: 2021. 11. 25.~12. 09.(14일간)
 - 나. 방 법: 서면(방문, 우편 및 팩스(063-452-6929) 등의 방법)으로 제출다. 서 식

연번	도 로 명	의견제출사유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락 처

- 7. 도로명 부여 절차
 - 가.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 군산시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의결 → 도로명 고시
- 8. 기 타
 - 가. 문의사항: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계(☎063-454-3983)

도로명 부여 도면<신역세권 2단계>



상세도면 <1번>



상세도면 <2번>



상세도면 <3번>



상세도면 <4번>



상세도면 <5번>



도로명 부여 조서<신역세권 2단계>

순번	관할구역	도로명	위계	시작점	끝지점	도로폭 (m)	도로길이 (m)	기초 간격	시점	종점	도로명 부여사유
1	내홍동	선사로	로	내정동 352-2	내정동 367-10	15	234	20	1	24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	내홍동	내정1길	길	내정동 산211-1	내정동 544-2	12	295	20	1	30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3	내홍동	내정2길	길	내정동 607-4	내정동 562-9	8	347	20	1	36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4	내홍동	내정3길	길	내정동 547-9	내정동 531-1	8	80	20	1	10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5	내홍동	내정4길	길	내정동 547-9	내정동 539-5	8	96	20	1	10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6	내홍동	내정5길	길	내정동 547-9	내정동 539-6	8	115	20	1	12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7	내홍동	내정6길	길	내정동 545	내정동 539-1	8	132	20	1	14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8	내홍동	내정7길	길	내정동 544-2	내정동 562-2	8	163	20	1	20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9	내홍동	폐촌5길	길	내정동 산200-1	내정동 498-2	10	235	20	1	24	석기시대 폐촌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10	내홍동	폐촌6길	길	내정동 494-8	내정동 494-12	8	235	20	1	24	석기시대 폐촌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11	내홍동	폐촌7길	길	내정동 515	내정동 505-2	8	235	20	1	24	석기시대 폐촌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12	내홍동	폐촌8길	길	내정동 926	내정동 494-13	12	114	20	1	12	석기시대 폐촌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13	내홍동	폐촌9길	길	내정동 926	내정동 505-2	8	114	20	1	12	석기시대 폐촌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도로명 부여 조사<신역세권 2단계>

순번	관할구역	도로명	위계	시제점	끝제점	도로폭 (m)	도로길이 (m)	기초 간격	시점	종점	도로명 부여사유
14	내흥동	역선2길	길	내정동 928	내정동 619-1	12	366	20	1	36	군산역의 상징성을 위해 부여
15	내흥동	역선3길	길	내정동 625-3	내정동 606-9	12	244	20	1	26	군산역의 상징성을 위해 부여
16	내흥동	역선4길	길	내정동 619-1	내정동 477-5	12	205	20	1	22	군산역의 상징성을 위해 부여
17	내흥동	역선5길	길	내정동 471-13	내정동 464-2	12	143	20	1	16	군산역의 상징성을 위해 부여
18	내흥동	선사1길	길	내정동 신90-1	내정동 368-4	10	520	20	1	54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19	내흥동	선사2길	길	내정동 451	내정동 368-4	10	392	20	1	40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0	내흥동	선사3길	길	내정동 455	내정동 452-1	6	62	20	1	6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1	내흥동	선사4길	길	내정동 369-2	내정동 산64	6	62	20	1	6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2	내흥동	선사5길	길	내정동 367-6	내정동 370-13	10	125	20	1	14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3	내흥동	선사6길	길	내정동 367-12	내정동 372-4	6	62	20	1	6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4	내흥동	선사7길	길	내정동 367-10	내정동 372-3	10	97	20	1	10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5	내흥동	선사8길	길	내정동 367-14	내정동 644-3	9	64	20	1	10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6	내흥동	선사9길	길	내정동 376-1	내정동 374-1	9	62	20	1	6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도로명 부여 조사<신역세권 2단계>

순번	관할구역	도로명	위계	시계점	관저점	도로폭 (m)	도로길이 (m)	기초 간격	시점	종점	도로명 부여시유
27	내 흥동	사육안1길	길	내정동 313-5	내정동 289-6	10	351	20	1	36	사육마을의 명칭을 방향성으로 부여
28	내 흥동	사육안2길	길	내정동 312	내정동 312-3	10	305	20	1	32	사육마을의 명칭을 방향성으로 부여
29	내 흥동	사육안3길	길	내정동 312	내정동 319-1	10	341	20	1	36	사육마을의 명칭을 방향성으로 부여
30	내 흥동	사육안4길	길	내정동 314-4	내정동 320-20	9	153	20	1	16	사육마을의 명칭을 방향성으로 부여
31	내 흥동	사육안5길	길	내정동 306	내정동 315	9	114	20	1	12	사육마을의 명칭을 방향성으로 부여

군산시 공고 제2021-2317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1.

군 산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대야면	리도	외덕선	대야 208호	산월리 755-10	산월리 918-20	360	산월리	8.0	8.0	농어촌도로 확·포장

2. 사업명 : 대야외덕~개정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3. 사업기간 : 2020. 01. 01. ~ 2022. 12. 31.

4. 사업시행 : 군산시청 건설과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지형도면고시도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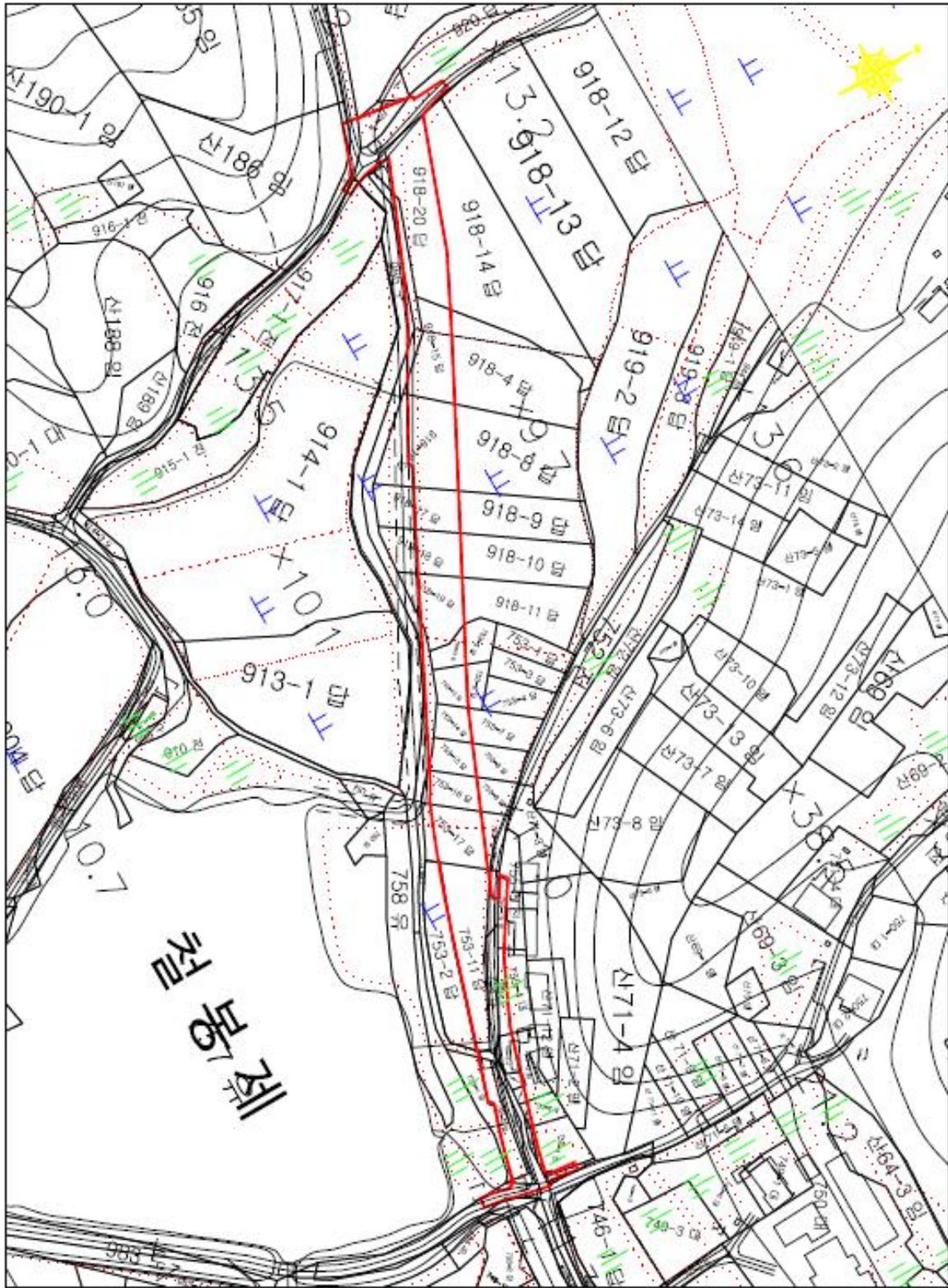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대야외덕~개정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내 용	
1	군산	대야	산월	산 186		임	1,983	18	최**	군산시 내운동 833-1 세광타운아파트 513호				
									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가 12-10 송천동진흥더블 파크아파트 108동 206호				
2				920	920-1	답	767	108	군산시					
3				920	920-2	답		24	군산시					
4				920	920-3	답	60	60	최**	군산시 용돈길 12,104 동 2002호(미룡동.금광 베네스타)	육산농협 협동조합	육산면 육산로 248	근저당	
5				986		구	6,635	258	국 (농림수산부)					
6				987		도	1,726	66	국 (농림수산부)					
7				917-1		전	1,686	10	유**	익산시 무왕로 25길 12, 702동 706호(부송동, 부송동제일아파트)	서전주새 마을금고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91	근저당 권, 지상권	
8				918-14	918-20	답	2,645	782	군산시					
9				918-4	918-15	답	1,494	396	군산시					
10				918-8	918-16	답	1,728	673	군산시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 사동 297 신사시타아 파트 102동 1105호												
11				918-9	918-17	답	992	388	군산시					
12				918-10	918-18	답	992	358	군산시					
13				918-11	918-19	답	992	361	군산시					
14				753-5	753-12	답	231	99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 죽로 136 519동 1302호 (송촌동,산비마을아파트)				
	송**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 대로175번길 46 1006호 (둔산동,이노빌아파트)												
	군산시													
15				753-6	753-13	답	231	133	군산시					
16				969		구	15,301	75	국 (농림수산부)					
17				753-7	753-14	답	380	132	군산시					
18				753-8	753-15	답	331	156	군산시					

19			753-9	753-16	답	331	201	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22, 102동 1001호 (사동,늘푸른아파트)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8번길 90, 204호 (구암동)				
								엄**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385-20, 303호 (과정동,롯데빌)				
								군산시					
20			753-10	753-17	답	496	375	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칠강로 713번길 6, 202호				
21			753-2	753-11	답	1,167	672	군산시					
22			755-5	755-15	전	301	65	한**	885				
								한**	894				
								한**	개정면 발산리 16				
								한**	890				
								한**	883				
								한**	884				
								한**	916				
23			754		답	142	142	군산시					
24			755-4	755-14	대	298	83	이**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45, 103동 1702호 (힐스테이트,온파아파트)				
25			755-3	755-12	전	235	16	군산시					
26			755-9	755-17	도	40	36.	한**	885				
								한**	894				
								한**	개정면 발산리 16				
								한**	890				
								한**	883				
								한**	884				
								한**	916				
27			756-2		도	99	99	군산시					
28			755-2	755-11	대	99	13	이**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45, 103동 1702호 (힐스테이트,온파아파트)				
29			755-8		도	3	3	한**	885				
								한**	894				
								한**	개정면 발산리 16				
								한**	890				

									한**	883					
									한**	884					
									한**	916					
30			755-7		도	13	13		한**	885					
									한**	894					
									한**	개정면 발산리 16					
									한**	890					
									한**	883					
									한**	884					
									한**	916					
31			756-1	756-3	답	354	174		군산시						
32			755-1	755-10	전	248	17		군산시						
33			735-3		도	76	76		군산시						
34			755-6	755-16	도	36	26		한**	885					
									한**	894					
									한**	개정면 발산리 16					
									한**	890					
									한**	883					
									한**	884					
									한**	916					
35			746-3		도	360	360		군산시						



1. 도면명 대야외역-개칭정신간 도로확충공사	2. 도면종류 지형도면 고지도	3. 도면번호 군산시 권설과	4. 도면비율 1 / 1200	5. 작성일자 2021. 11.	6. 작성자 (Blank)
-----------------------------	---------------------	--------------------	---------------------	----------------------	-------------------

군산시 공고 제2021-2318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대야외덕 개정장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

군 산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대야외덕 개정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 나. 위치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56-2번지 일원
- 다. 사업내용 : 농어촌도로 개설 L=360m, B=8.0m
- 라. 사업시행자 : 군산시청 건설과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지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53-12지 외 12필지
- 나.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산시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21.12.1. ~ 12.15.(14일간)
-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063-454-3592)
- 다. 이의신청 방법 : 기간 내 군산시청 건설과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가.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량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 산정방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군산시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시설계(063-454-3592/3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 조서

- 대야외덕~개정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내 용	
1	군산	대야	산월	산 186		임	1,983	18	최**	군산시 나운동 **				
									최**	전주시 덕진구**				
2				920	920-3	답	60	60	최**	군산시 용둔길 **	옥산농협 협동조합	옥산면**	근저당	
3				917-1		전	1,686	10	유**	익산시 무왕로 **	서전주새 마을금고	전주시 완산구**	근저당 지상권	
4				918-8	918-16	답	1,728	673	군산시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5				753-5	753-12	답	231	99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	대전광역시 서구 **												
	군산시													
6				753-9	753-16	답	331	201	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												
	엄**	대전광역시 서구 **												
	군산시													
7			753-10	753-17	답	496	375	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8				755-5	755-15	전	301	65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개정면 발산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9			755-4	755-14	대	298	83	이**	군산시 옥산면 **					
10				755-9	755-17	도	40	36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개정면 발산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내 용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11				755-2	755-11	대	99	13	이**	군산시 옥산면**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개정면 발산리 **				
12				755-8		도	3	3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13				755-7		도	13	13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개정면 발산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14				755-6	755-16	도	36	26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개정면 발산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한**	대야면 산월리 **				

의 견 서

1.제 목	
-------	--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	--

4.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군산시 공고 제2021-2346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1.

군 산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옥도면	리도	무녀1선	옥도 214호선	무녀도리 222-40	무녀도리 222-39	380	무녀도리	8~15	8	농어촌도로의 개설

2. 사업명 : 옥도 214호선 농어촌도로(광역 해양테저체험 복합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기간 : 2020. 01. 01. ~ 2023. 12. 31.

4. 사업시행 : 군산시청 향만해양과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지형도면고시도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향만해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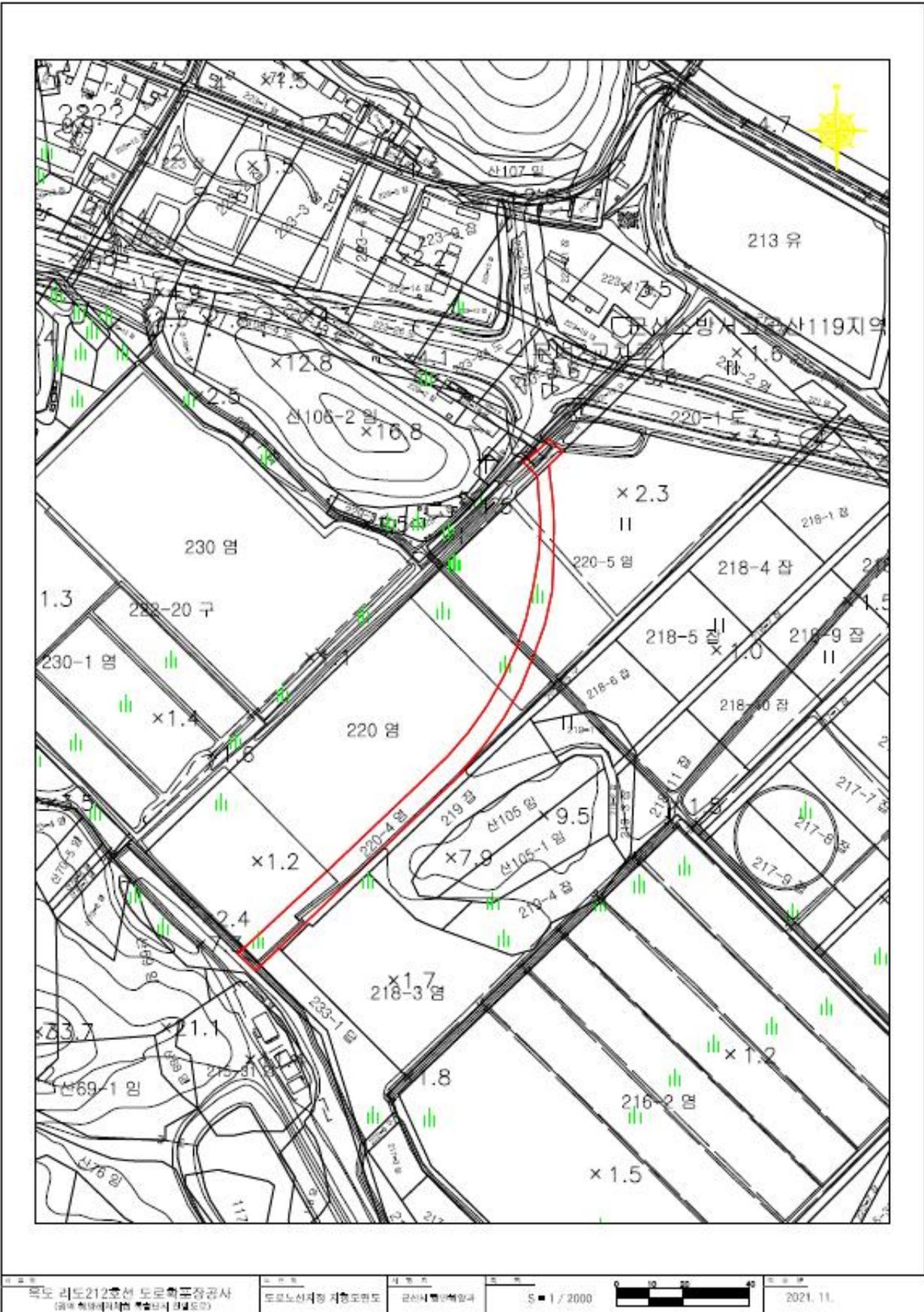
※ 기타 공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향만해양과(063-454-2813), 도로노선지정 관련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20-4 (220)	염	39,975.0	4,390	김*수	익산시 남중동 529-18				
2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22-39 (222-10)	구	482.0	64	김*수 최*성 국세청	1. 익산시 남중동 529-18 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213-9 3. 국세청				
3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22-40 (222-20)	구	8,645.0	237	김*수 최*성 기재부	1. 익산시 남중동 529-18 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213-9 3. 기재부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 (군산지점)	근저당권	

297mm×210mm[백상지 80g/㎡]



군산시 공고 제2021-2348호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연 번	안 건 명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8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군 산 시 장

